

[첨부1]

e편한세상 무등산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안내문

I. 공급개요

- **단지명** : e편한세상 무등산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459-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 13~16층 6개동 총 286세대 중 일반분양 104(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9세대 포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세대수** (※ 괄호안의 수는 예비자 수)

구분		84A	84B	113	합계	
기관별 세대수 배정	국가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외	2(6)	1(3)	-	3(9)
		장기복무제대군인	1(3)	-	-	1(3)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3)	-	-	1(3)
	장애인	광주시청	2(6)	-	-	2(6)
		전남도청	1(3)	-	-	1(3)
	중소기업근로자		1(3)	-	-	1(3)
	계		8(24)	1(3)	-	9(27)

※ 배정세대에 대한 추천 및 예비 추천 세대수에 맞게 대상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가격 및 납부조건**: 미정(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참조)

II. 공급일정(예정)

구분	일정(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	2020년 05월 28일(목)	* 일간신문, 당사 홈페이지(www.kdc-apt.co.kr),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m)
건본주택 오픈	2020년 05월 29일(금)	* 당사 건본주택
특별공급 청약 신청	2020년 06월 08일(월)	* 인터넷 신청(www.applyhome.com) (08:00~17:30) * 건본주택 신청 시(10:00~14:00)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함 (자격입증 서류 지참)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	2020년 06월 18일(목)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m) 개별조회
자격확인서류 제출일	2020년 06월 20일(토) ~ 27일(토) (8일간)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 시간 : 10:00~16:00
계약 체결	2020년 07월 01일(수) ~ 03일(금) (3일간)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 시간 : 10:00~16:00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한국감정원에 등록(미등록시 청약불가)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회신 요청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대상자 통보** : 해당 기관에서는 특별공급 대상자를 신청하여 [첨부2] 특별공급 대상자 명단 양식을 사용하여 회신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방침에 따라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상기 일정은 분양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함.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납입금액 요건을 갖추신 분(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 경과,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자)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민’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음.)
(중소기업근로자, 10년 장기복무군인,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기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기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이상인 자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금액

구 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200만원

③ 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및 제4조 3항에 의거하여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지역(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성년자만 추천 가능.(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5.28.예정)현재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당첨일로부터 1년)내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기관추천 무주택세대구성원 대상은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정하여 선정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자만이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불가)
- 동호수 추첨은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한국감정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낙첨자 잔여세대 배정 및 예비입주자 선정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접수 유형별,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계약 취소, 부적격 세대로 확정되어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되며 예비 입주자 계약 이후에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IV.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만65세 이상의 인터넷 청약자인 경우에만 방문접수(건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청약(청약Home)의 경우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 앞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신청 접수(주택전시관)시에는 공급별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5조,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공급(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회차가 소진 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하여 모두 당첨된 경우 당첨 모두를 부적격 처리합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 주택, 미계약 및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서 입주자로 선정(동·호수를 배정)된 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별공급 청약 시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 기타 특별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를 준용합니다.
- 동·호수 확인 시에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확인서류 접수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정방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증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 대리인 발급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 신청 시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국가공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 제외.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 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무주택 서약서	-	•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제3자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제3자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인장	대리인	

■ 기타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062-513-3332 (www.kdc-apt.co.kr)

■ 건본주택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131-8

[첨부3]

e편한세상 무등산 특별공급 배정현황

1. 배정현황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계	
084.9508A	84A	85	8	8	17	2	35	50
084.9926B	84B	7	1	1	1	0	3	4
113.9295	113	12	0	1	0	0	1	11
합계		104	9	10	18	2	39	65

2. 관련자료

구분			배정 세대		근거자료
			배정	예비	
일반 (기관추천) (10%) 9세대	국가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외	3	9	제36조(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그 건설량의 10퍼센트 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 제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15퍼센트, 그 외의 지역에서는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장기복무제대군인	1	3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1	3	
	장애인	광주시청	2	6	
		전남도청	1	3	
중소기업 근로자		1	3		

- ※ 상기 배정세대 및 예비추천인은 각 기관에서 본 사업주체에 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 예비추천인의 경우 각 타입별 300%(소수점 이하 절상)의 비율로 배정되었으며, 각 기관별 예비추천인 배정은 사업주체에서 임의 배정함을 알려드립니다.